

2002. 7. 11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시민·종교단체 연대나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살)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총련 합법화에 분격적으로 나서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강만길 상지대 총장과 함세웅 신부 등 각계 인사 600여명을 회원으로 지난 3월 출범한 ‘한총련 합법활동 보장 범사회인 대책위원회’는 12일 사회단체 대표, 한총련 대의원들과 함께 서울지검을 항의방문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합법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18일과 19일 각각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하는 ‘종교인 1천인 선언’과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을

2002. 7. 11

대법원 판결 따로, ‘민주화 인정’ 따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97년 사랑한 한총련 간부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제성과 가치의 혼란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짐작케 한다.

우선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98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 대법원은 98년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의문사위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하는 근거로 “대선자금 공개와 한보리 진상규명 등 (숨진) 김준배씨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권리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 판단에서 주목한 부분은 정강·정책 등에 나타난 이 단체의 성격과 그에 따른 활동들이었다. 따라서 한총련이 97년 당시 대선자금 공개 등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

이 현행법에 따른 이적성을 면제해줄 수는 없다.

이런 ‘고민’ 끝에 의문사위는 아예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철폐를 국회 등에 권고했다. 의문사위의 주장은 앞뒤가 뒤바뀐 가치판단을 담고 있다. 마치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된 것은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므로, 기성사회의 가치와 법이 한총련을 위해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의문사위가 한시적 대통령 기구로 출범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발생한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심각한 흑백 갈등을 겪었던 남아공(南阿共)의 ‘진실화해위원회’와 자주 비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의문사위는 2000년 10월 출범 후 심각한 내부적 이념갈등을 보였고, 지난 3월 양승규 전 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물러났다. 의문사위가 한국사회의 진정한 화해의 계기를 제공하기보다는 ‘남남(南南) 갈등’의 진원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2. 7. 11

한총련간부 민주화인정 문제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도피하던 중 숨진 전 한총련간부 김준배(金準培)씨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국보법 폐지까지 권고한 것은 잘못이다. 한총련이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마당에 이는 명백히 기존 법질서를 뛰어넘는 결정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의문사위가 고 장준하(張俊河) 최종길(崔鍾吉)씨의 사인규명에 성과를 올리는 등 의미 있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 암울한 시대에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에 대해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를 민주화 범주에 넣는 데는 문제 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최근 들어 한총련이 달라 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김씨 활동 당시 한총련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목적을 관철하려는 과격노

선을 걸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관계자도 김씨는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시위를 주도해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문사위가 대법원판례까지 부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미 국가기관이 내린 결정을 다른 국가기관이 뒤집는 것은 기준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문사위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 국보법폐지까지 건의했으니 의문사위의 직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서해교전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국보법폐지 권고는 시점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했다.

국민은 지금 지난번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사태 관련학생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을 때와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한시적인 국가기관들이 경쟁 하듯 나서서 이처럼 국가의 계통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민주화는 무엇이고 국법질서는 무엇인지 국민은 혓갈리기만 한다.

2002. 7. 11

憲辯 “의문사 진상규명法 헌법소원 제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鄭起承)은 10일 전 한총련 투쟁국장 고 김준배씨의 추락사 사건을 ‘의문사’로 규정한 의문사위의 9일 결정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거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변’ 총무인 임광규(林光圭)

63) 변호사는 “특별법은 의문사 규정이 애매모호해 작위적으로 해석 할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을 정치적 배경에서 임명된 9명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李泰勳 기자 libra@chosun.com

2002. 7. 11

‘김준배씨 민주화’ 논란 증폭

당시 수사검사등 검찰 강력반발

규명위 “구타의혹 북살 직무유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 투쟁국장 출신 고(故) 김준배씨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고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김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현 영월지청장) 검사가 “김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다.”며 규명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박함에 따라 검찰과 규명위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

다.

진상규명위 고위관계자는 10일 검찰의 반발과 관련, “정 검사는 당시 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한 김씨를 구타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음을 알았고, 유족이 구타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사건 다음날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규명위는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정 검사를 고발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검찰권 배려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측은 “규명위의 결정이 사법정의마저 흔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

부 검사는 “규명위도 국가기관인 만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가기관의 판단이라 기보다 진보세력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총련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은 변함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한총련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집행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의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 의문사를 축소·은폐한 당시 경찰 수뇌부와 검찰 관권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이창구 안동환경기자 window2@kdaily.com

2002. 7. 11

의문사委 ‘김준배씨 민주화 판정’ 하루前

검찰, 한총련 150명에 소환장

“기습통보·시점미묘” 논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한 한총련 전 간부 김준배씨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판정하기 하루 전인 8일, 검찰이 한총련 대의원 150여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교수등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들의 조직 탈퇴 권유와 설득을 계속해 왔다”면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이상 권고기간이 끝나는 이달말까지 탈퇴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년 한총련 탈퇴 권고기간

을 정한뒤 종료시한을 앞두고 소속 대의원들에게 소환통보를 해왔다. 이에 대해 한총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의문사위가 김준배씨에 대해 민주화 운동 판정을 내리기 직전 검찰이 김씨 사망사건은 폐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에 기습적인 소환통보를 내린 이유가 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총련은 1차 출두기한(13일) 하루 전인 12일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2차 출두 기한인 19일에는 소환장 발부자를 포함해 대의원 900여명이 공개 출두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2002. 7. 11

보안법 개폐 권고 경청을

대통령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97년 한총련 5기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숨진 김준배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진상위’는 실정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간부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이유를 “수사기관은 제5기 한총련부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 스스로도 강령 및 활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제4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규정한 사례가 없고 현재 한총련이 문제의 강령을 수정하는 상황인 만큼 한총련의 이적성은 명백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진상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가입사건을 다룬 국내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보법 제7조는 국제인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사례를 들어 “냉전질서의 산물이며 권리주의 통치에 악용돼 온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신속하게 개정 내지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진상규명위의 이같은 결정과 권고는 한총련 현 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반격은 물론 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법논리로만 따지면 진상규명위원회가 현행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앞뒤가 맞지 않거나 헌법재판소나 할 수 있는 현행법의 개폐를 권고한 것도 반론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실정법에 근거한 법논리로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민주화, 인권 등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치를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데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은 사례에 비춰 볼 때 그렇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권고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권고를 경청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또 논란 부른 민주화 인정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전 한총련 핵심 간부의 사망을 ‘의문사’로 인정한 뒤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철폐할 것을 정부에 권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1997년 10월 이 한총련 간부가 사망할 당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 규탄,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98년 7월30일 대법원이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판결과는 배치되는 데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위법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숨진 사람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더구나 규명위가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대학생 전체를 이적학생으로 규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보인다.

민주화 운동 인정이나 그에 대한 보상은 민주화를 위한 활동이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만 가능하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모든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에 따라 민주화 운동 여부가 결정될 때는 오히려 진정한 민주화 유공자에게 모독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개정-폐지를 권고한 것도 북한이 서해교전사태를 유발한 현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 동의대 사태처럼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혁정질서를 침해한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심의할 경우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총련 150명 소환 논란

**검찰, 민주화운동 판정 전날 기습통보
재야단체 “의문사委 결정 무력화 의도”**

전 한총련 간부 활동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민주화운동 판정 전날인 8일 검찰이 한총련 대의원 150여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10일 “(한총련) 탈퇴 권고 기간이 이달에 끝남에 따라 예년처럼 지청과 경찰이 지역별로 (대의원들에 대해)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서울지검이나 대검 차원에 기획으로 무더기 소환통보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총련 소속원에 대해 곧바로 수사하지 않고

교수 등을 통해 탈퇴 권유와 설득을 해 왔다”며 “그러나 7월 이후에도 탈퇴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총련과 재야단체들은 “한총련 이적 논쟁에 쇄기를 박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총련 대(집행위원장 한충목·韓忠穆)는 이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사망을 불러온 책임자와 진실을 은폐한 김·경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규명위에 제출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민·형사상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희기자 river@hk.co.kr

(임) 소속 김승교(金承敎) 변호사도 “검찰이 김씨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기습적인 소환통보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1차 출두 기한(13일) 하루 전인 12일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2차 출두 기한인 19일에도 소환장 발부자를 포함, 900여 대의원이 공개 출두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집행위원장 한충목·韓忠穆)는 이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사망을 불러온 책임자와 진실을 은폐한 김·경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규명위에 제출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민·형사상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희기자 river@hk.co.kr

또 논란부른 의문사 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제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투쟁국장 김준배(사망 당시 27세·광주대)씨를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로 판정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를 건의했다.

규명위의 결정을 접한 국민들의 머리는 무척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우선 한시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떤 규명위가 법률 해석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법률의 최종 해석권이 대법원에 있다는 것은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명백한 상식이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핵심 간부가 민주화 운동가라면,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닌 민주화 단체인 셈이다. 그 동안 한총련 간부를 추적·검거해 온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권력은 민주화 단체를 탄압하는 반 민주화 세력이었다는 얘기다. 규명위는 “김씨의 활동이 한보비리 규명, 대선자금 공개 등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

총련 간부라는 사실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적 단체 구성원이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의 비리를 규명하라는 ‘민주화’주장을 편다면 민주화 운동 인사란 말인가. 규명위의 결정은 실정법의 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법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 개·폐 권고 주장도 부적절하기는 미친 가지다. 규명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숨진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규명위는 설립 목적에 따른 결정만 하면 그만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기관·단체마다 입장이 다른 보안법 개·폐 문제를 굳이 언급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명위가 국가의 계통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곤란하다.

동아·조선 국보법 개폐 권고에 '딴죽'

"의문사위 발표는 대법판례 어긋나는 법 질서 교란행위"
경향·한겨레 "소모적 이념논란보다 개폐본질 논해야"

발행일 : 2002.07.11 [350호 9면]

지난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과 전 한총련 간부 김준배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활동을 인정한 것을 다룬 언론보도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10일자에서 이 문제를 <국가기관, 보안법 개폐 첫권고>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규정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폭넓게 오용·악용되고 있어 개정 또는 폐지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부당하며 김씨의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한 경제질서와 민주 정치제도를 요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규명위의 조사결과를 전했다.

그러나 동아와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개폐 건의보다는 한총련 간부가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더 주목해 논조를 꾀했다. 동아일보는 10일자 <한총련간부 '민주화' 인정 논란>, 조선일보는 10일자 <한총련간부 민주화인정 논란> 제하 기사에서 이번 규명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더 비중을 둘러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또 11일자 <한총련간부 민주화인정 문제 있다> 제하 사설에서 "한총련이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마당에 이는 명백히 기존 법질서를 뛰어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며, 조선일보 역시 11일자 <대법원 판례 따로, '민주화인정' 따로> 제하 사설에서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가치흔들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징작케 한다"면서 "의문사위가 남남갈등의 진원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주문'까지 내놨다.

그러나 이들 신문의 보도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밝힌 결과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명위의 발표는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은 폭넓게 오용·악용되고 있어, 이적단체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개·폐되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따라서 동아와 조선은 한 사람의 한총련 간부가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았다는 일개 사례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설득을 하는 게 더욱 본질적인 문제제기였다는 것이다.

11일자 경향신문 <국보법 논쟁 이전 매듭져야> 제하 사설은 이런 이유로 이번 규명위 발표와 관련한 논쟁에 결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설은 "이번 발표는 한총련 자체의 이적단체 규정과 별개로 구성원 개인의 활동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며 따라서 한총련의 이적성 시비나 소모적 이념 논란보다는 국보법의 개폐라는 본질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지한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국보법 문제는) 합리적 법치주의의 구축을 통한 체제의 우월성 확보가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의 수단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진상규명위의 발표가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보법 개폐가 진지한 공론의 장에 오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석 기자(arisan@mediaonul.com)

생생 따라잡기

● 의문사규명위, 한총련 간부 민주운동 인정 그 후

국보법 사범 민주화 인정 논란

"권위주의 항거, 실정법 위반 필연" ... "초헌법적 발상 곤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진은 이 아파트 209호에 있던 신 모씨가 경찰이 추락한 김씨를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 수사검사였던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검장)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김씨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등 민주화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사망원인도 추락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만길 고려대 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 각계인사 600여명이 참여한 '한총련 학술활동보장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오는 12일 서울지검을 향해 방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학법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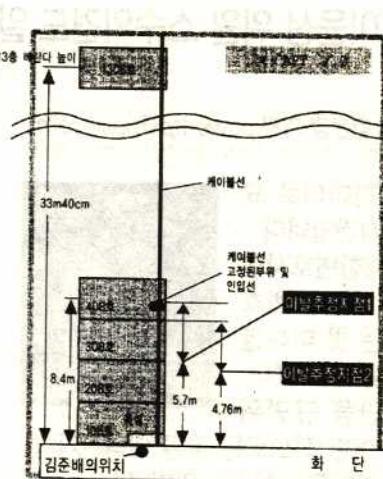
△ 김준배씨 어떻게 죽었나 = 97년 9월 15일 자정 무렵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던 김준배씨가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 거물관 증 경찰의 급습을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다 떨어져 사망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경찰이 발부돼 쓰기던 품이었으며 김씨가 거기 아파트에 은신중이라는 침보를 입수한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원 25명이 이날 침체포에 나선 것이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13층 배란다를 통해 TV케이블선을 타고 내려가다 6층~8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를 날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 무엇이 새롭게 밝혀졌나 = 위원회는 김씨가 추락 사했다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추락에 의한 충격과 추락 직후 경찰의 구타로 김씨 사망의 공통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또 김씨가 추락한 지점이 6층~8층이 아닌 4층이며 김씨의 발과 지면의 거리가 약 3~4미터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경찰과 경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도표 참조)



● 김준배씨 사망 현장도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사건을 축소수사 한 힘으로 관련 경찰과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감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대해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윤기 검사는 "김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국보법 개폐 권고 논란 = 또 위원회는 이적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국회에 권고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도 문제삼았다.

위원회는 "이적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오·남용되고 있어 개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총련의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 등 강령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나 목적과 취지가 북한과 다르므로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연대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를 권고한 것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화보상실의 위원회는 김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02. 7. 12

● 변협 공보이사 하창우 변호사

“의문사 결정, 상당히 합리적”

‘이윤성 위원 소수의견도 일리 있어’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한마디로 묘한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호사는 첫 마디를 이렇게 꺼냈다. 그만큼 규명위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 변호사는 규명위가 내린 의문사 결정에 대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규명위가 추락에 이은 구타 행위가 김씨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김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데는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현행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간부의 활동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이 될 수 있느냐’라는 항간의 여론은 다소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법원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그 구성원을 처벌하는 것과



김씨가 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김씨가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래서 노동악법철폐 등 사회민주화 의도를 가지고 활동했다는 점을 규명위가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김씨의 행위가 무엇이었느냐는 실질적 관심으로 판단해야지 한총령 투쟁국장이라는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김씨가 구타로 사망했다는 규명위의 결정은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김씨 몸에 나 있는 등그스름한 찰과상 흔적만으로 김씨에 대해 위법한 구타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그런 면에서 이윤성 위원의 소수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김준배씨 사망에 대해 의문사로 결정한 규명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2002. 7. 12

● 현변 총무 임광규 변호사

“진실 규명 아니라 의혹 증폭”

현변 “의문사특별법 협법소원 제기할 터”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이번 결정은 진실을 ‘규명’ 한 게 아니라 의혹을 ‘증폭’ 시켰습니다”



‘현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임광규 변호사는 고 김준배씨 사망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10일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법에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투쟁국장으로 경찰에 죄기다 추락사한 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로 사망한 사례’가 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규명위가 고 최종길 교수의 경우에 이어 김준배 씨의 사망도 철저한 실체적 규명없이 의문사로 판정했다”며 “정치적 의도로 임명된 비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됐기에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든 조사를 통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규명위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해 달라는 요청에 임 변호사는 “규명위의 존재 자체가 초헌법적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9명이 모여 다수결로 진상을 규명했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2. 7. 16

"정윤기검사 프락치공작 은폐 공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세)씨가 경찰의 추적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가 프락치공작 은폐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정 검사는 경찰에 매수돼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김준배의 소재지를 경찰에 제보했던 전씨에 대해 범인은닉죄로 구속영장을 청구·발부받아 기소했다"며 "이는 당시 전씨 및 김씨와 함께 아파트에 있던 김모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조차 무혐의 처리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 "당시 해당경찰서 간부와 담당형사로부터 '프락치 역할을 한 것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전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 정 검사에게 전씨 구속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정 검사는 이에 따라 전씨가 마치 범인은닉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가장,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지청장은 입장표명 요청과 관련, 대검 공보관을 통해 "그 당시 경찰에서 소위 프락치를 이용, 김씨를 체포했다는 것은 언뜻 들은 적이 있지만 그 프락치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지난해 전씨가 양심선언 한지 한참 후에야 당시 프락치가 전씨였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2002. 7. 16

"검사가 프락치공작 은폐공모"등록시각 2002-07-16 19:02 [김태진] **[글프리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가 경찰의 추적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가 프락치공작 은폐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정 검사가 경찰에 매수돼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김준배의 소재지를 경찰에 알린 전 모씨를 범인은닉죄로 구속기소했다며

이는 당시 전씨와 김씨와 함께 살던 김 모씨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락치 역할했던 전씨를 학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시 경찰서 간부와 담당 형사가 정검사에게 전씨 구속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따라서 정 검사가 전씨가 김준배씨를 숨겨준 것으로 가장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영월지청장을 맡고 있는 정 검사는 "당시 경찰에서 이른바 프락치를 이용해 김씨를 체포했다는 사실은 언뜻 들은 적이 있지만 그 프락치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지난해 전씨가 양심선언 한뒤 프락치가 전씨였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진 [tjkim@yna.co.kr]

2002. 7. 17

"당시 지휘검사 사건은폐 시도"**의문사委 '김준배씨사건' 밝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997년 사망한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사건의 지휘 검사였던 정윤기(鄭倫基)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16일 밝혔다.

황인성 사무국장은 "김준배씨의 소재지를 알려준 전모씨가 동료 학생들로부터 프락치로 몰릴 처지에 놓이자 당시 정 검사는 전씨가 범인은닉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해 법원을 속이고 영장을 발부받아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국장은 "목격자를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정 검사는 직무유기죄 성립 여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9일 김준배씨 사

건을 발표하면서 검찰 자체의 감찰과 그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는데 정 검사는 오히려 진상규명위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김씨, 전씨와 함께 있었던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범인도피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반면 김씨 체포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전씨는 범인은닉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지청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씨가 당시 수배자였던 김준배씨를 은닉했고 경찰이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검거활동을 방해해 구속했다"며 "공안사범 검거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고나 통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시 전씨가 프락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2002. 7. 17

정윤기검사 프락치 공작 은폐 공모

2002년 07월 17일 00시 00분 입력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세)씨가 경찰의 추적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가 프락치공작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규명위의 발표내용을 정면 반박, 논란이 일고 있다

2002. 7. 17

언론에 할 말 있다

사상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를

-김준배씨 보도 유감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97년
사망한 김준배 씨
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사
망하였다고 인정하
고 이를 국민 앞에



증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공포하였다. 이에
대해 그간의 노고와 성과를 인정하는 언론의 반
응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신문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을 통하여 위원회 결정을 비판
하였다. 비판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 한총련
부에 대한 이번 결정은 한총련을 아직단체로 규
정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 ② 국보법폐
지까지 권고했으나 위원회의 직무한계가 어디까
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③ 서해교전으로 국
가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국보법폐지 권고는 시점상으로도 적절하
지 못했다”는 것 등이다.

우리 법 체계상 실정법은 관례에 우선한다. 의
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민주화운동’의 개
념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석할 수 있는 권한
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는 국가보안
법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취지를 참조하여 김준배 사건을 판단하였다.
또 대법원은 한총련 구성원에 대한 개별 형사사
건에서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고 위원회는 김준배가 한총련 투쟁국장
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
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
회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을 배척한 것은 아니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위
원회는…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포하여
야 하고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보
고서에 기재하고 위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김준배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고한 것은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권
고한 것으로 직무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서해교전이 일어난 시점에 국가보안법 개폐권
고는 적절치 못했다는 재기가 정당성을 염두에
면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
을 막거나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보안
법은 ‘시상의 자유’, 곧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양
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서해교전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개폐를 미워야 한다는 것은, 국
가적 위기가 오니까 자유민주질서를 포기하자는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 오히려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자유민주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사상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 인
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2. 7. 18

한국민주당 대구광역시당

‘프락치 공작 공모’ 진실 밝혀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
배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정윤기검사가 경찰 프락
치를 고의로 구속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김씨
소재지를 제보한 프락치 전모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
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 검사는 부인하고 있으나 만약 그 설명
이 사실이라면 정 검사는 경찰의 프락치 공작 은폐에
가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씨는 당시 경찰에 끊
겨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다 3층 부근
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져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진상규명위가 최근 김씨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관
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사망’ 한 것으로 결론
지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 핵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영장이 발부돼 체포과정에서 숨진 사람을 민

주화 운동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그
같은 논란과는 별도로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프락치를 고용했고, 경찰이 프락치를 보호하기 위해 고
의로 구속했다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진상규
명위는 일본 법의학자의 소견을 인용해 김씨의 주요
사인은 추락이 아닌 구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검찰은 하루만에 추락사로 처리했다.

전모씨도 지난해 9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서 ‘경찰과 프락치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
장했다. 진상규명위와 유가족은 이같은 점을 들어 검
찰과 경찰이 한편이 돼 의문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
혹을 제기한다. 진상규명위는 이제 김씨 사건을 처리
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에 하나 검찰이 불기소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제3자의 판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02. 7. 18

규명해야 할 프락치 '위장구속'

국가공안기관이 수배학생을 검거하기 위해 추악한 프락치 제도를 버젓이 운영했음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 규명위는 그제 1997년 연행과정에서 숨진 김준배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프락치를 고용하고 금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안기관의 프락치 활용은 포섭됐던 사람들의 개별적인 '양심선언'으로 이따금 알려 지기는 했지만, 규명위가 프락치 제도를 공식으로 밝혀낸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김씨 사건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하급경찰은 프락치로 포섭하려고 접근한 김씨의 후배에게 은신처를 알려 주면 1300~1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실제로 500만원을 주었다. 나머지 돈은 김씨가 숨지는 바람에 검거자의 특진이 이뤄지지 않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기관의 이런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시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달된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예산의 불법전용은 없었는지, 당시 공안기관의 상층부가 프락치 제도를 권장했는지 등이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규명위의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당시 수사검사가 프락치를 보호하려고 혐의를 조작해 구속했는지 여부이다. 규명위의 발표가 맞는다면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도리어 혐의를 날조하고 진상을 은폐한 꼴이 된다. 규명위는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영월지청장이 프락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은닉 혐의가 있는 것처럼 꾸며 구속을 했으며 이를 입증할 당시 경찰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지청장은 검거과정에 관해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았고 구속자가 프락치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해명자료를 돌렸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정 지청장은 규명위의 발표 때마다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지 말고 규명위의 조사에 직접 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관련기사

• 의문사위 "경찰, 프락치 고용"

2002. 7. 20

한총련 합법화 미룰 이유 없다

최근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처음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한총련 합법화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동안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사회인대책위원회는 19일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각계 지도자 1천인 선언'을 하는가 하면, 10기 한총련 집행부는 수배 중인 대의원들을 검찰에 자진출두하게 하는 등 합법화를 위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총련은 해마다 각 대학에서 선거로 뽑힌 총학생회 간부들에 의해 집행부가 구성되는 민주적인 대학생들의 조직이다. 1996년 연세대 통일집회와 97년 '프락치 치사사건'으로 사법처리되고, 98년엔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1300명의 구속자와 300명의 수배자가 양산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5기 한총련 집행부에 대해 적용된 이적단체 규정을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

고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수많은 대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온 것이다. 한총련은 6기 집행부 이후 이른바 이적성을 보이는 활동을 해온 적이 없다. 문제는 연방통일제 방안과 내부 강령의 과격성 정도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9기 집행부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삭제하였고, 올 봄에 구성된 10기 집행부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한총련의 강령들을 바꾸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예단을 가지고 과거 활동의 한 부분만을 확대해 한총련을 아직도 이적단체로 두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양심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부정이고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위험적 요소도 있다. 한총련 합법화가 논의될 때마다 관계당국은 한총련의 내부 강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총련이 변한 만큼 이적규정은 철회돼야 하며, 합법적인 활동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02. 8. 9

노동일보

한총련 합법화 10만 서명운동**대의원 수배중단·국가보안법 철폐도 요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김형주 의장 1차 공판일인 8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과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한 전국 58개 대학 228명의 한총련 대의원들은 '한총련 대의원 선언문'을 발표 10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성원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과 한총련 대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고했듯이 한총련 이적규정은 이미 존재근거를 상실했다"며

"김형주 의장 공관에 대한 공정한 법 적용과 한총련 정치 수배

를 해제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총련은 100만 대학생

는 학생운동 탄압으로 볼 수 뿐이 없다"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총련은 대의원 인권 탄압 관련 오는 12일과 25일 경에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 등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오후 1시 서초동 경찰청 앞에서 '10기 한총련 의장 선방과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10만인 선언운동을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김봉석 기자
remindme@laborw.com

2002. 8. 20

한국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살피는 한글

사회

“공권력이 신뢰 받으려면 과거 청산 먼저”**‘민주화관련 의문사’ 진상 밝히는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에 대해 재조사 한후, 그 결과를 발표해 거 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1997년 수배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를, 지난 7월 9일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의 친반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본지에서는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을 만나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너무 늦게 시작된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했다.

자아출신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인터뷰 내내 새 시대

로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공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과거의 잘못을 털어버려야 한다”면서 “의문사 진

상규명 작업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짚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문사위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다. 조사 과정에서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체를 부검한 의사, 사건 당시의 조사관 등 참고인들 중에서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이 많아요. (살아 있는) 참고인들의 기억도 흐릿해졌고, 자료도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문제는 국가 권력과의 마찰 때문에 벌어진 죽음이라는 겁니다. 당시 (공안기관은) 상당히 비밀리에 운영됐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어요.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진상을 충분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사 범위도 넓고 기간과 인력도 많이 요구돼요.

법 위반과 민주화 운동자 인정은 다른 문제

1997년에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의문사한 김준배 씨를, 지난 7월 9일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선·동아 등 일부 언론에선 한총련이 이작단체라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데

당시 실정법을 위반했고, 지금도 위반 학생들을 구속하고 있는 형편에서 주요 간부를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그쪽 얘긴 거 같은데. ‘실정법 위반’과 ‘위반한 활동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있다’라는 것은 서로 양립이 가능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을 여러 차례 했고요. 지금 대통령도 독재정권 시절 국보법으로 사형까지 언도받았는데, 그 양반이 ‘민주화 운동을 안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성립이 안되는 말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 보안사의 활동 기록이 나오면 도움이 될 텐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다 폐기했다고(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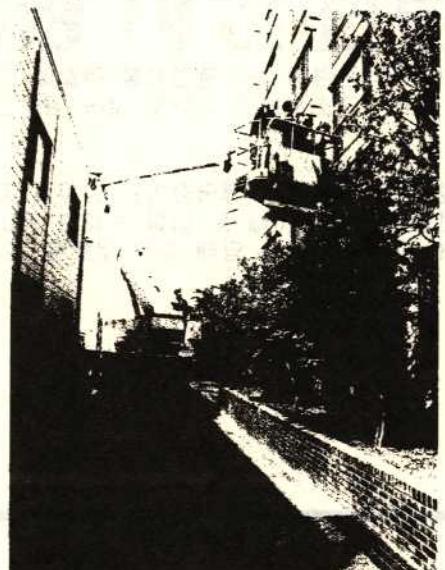
지금으로선 당시 녹화사업 주체들의 자료가 안 나오니까,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어요.

녹화사업 진상 조사와 관련해 늦어도 8월 말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실현 가능한 일인가

1997년 김준배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정윤기(현 영월지청장) 검사는 “김씨는 폭력시위를 주도해 민주화정질서를 침해했다”면서 단순한 ‘추락사’ 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초 발표에는 케이블 선을 타고 도망가

2002. 8. 20



다가, 가속이 불어 6~9층 사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돼 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대략 3층 정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4층 정도에, 선을 벽에 묶어 놓은 테가 있어요. 검찰 논리대로 가속도가 불었다면, 그 곳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손을 바꿔 잡고 내려온 자국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중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추락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점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시 경찰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목격자를 찾아 진술을 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물건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이었고, 누가 뛰어 올라와서 발길질 하고 몽동이로 내려쳤다”고 말했어요.

“녹화사업 관련 자료 다 폐기했다?”

최근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윤종관 학생들을 강제 징집한 후 전면적인 사상 개조를 위해 실시한 녹화사업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권력핵심부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 보안사의 활동 기록이 나오면 도움이 될 텐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다 폐기했다고(웃음).

지금으로선 당시 녹화사업 주체들의 자료가 안 나오니까,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어요.

일부선 “왜 갈등을 유발시키느냐” 못마땅해 하기도

1973년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대해 의문사

위는 ‘공권력에 의해 탄핵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사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모든 나라가 채택하진 않지만 많은 선진국이 전쟁,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국제 관습법 정도로 정착됐다고 판단하는데, 우리나라 아직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시민단체들이 ‘국가 기관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의문사 진상 규명 작업이 2년 가까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의문사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정착된 과정이 길다보니까,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중요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회 일각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성질서에서 혁신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왜 자꾸 지나간 비극적인 일들을 들춰내서, 갈등을 유발시키느냐”고 못마땅해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유족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인정해야만 (가족의 의문사로 인해 생긴)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순 기자 blue@sisa-news.com

2002. 8. 20

2002. 8. 20

의문사 김준배씨 폭행 경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97년의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당시 김씨를 폭행했던 경찰 이모(32)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26일 "지난 5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고 현재는 광주고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조사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고발조치가 가능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일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던 김씨가 지난 97년 경찰의 몇에 걸려 검거되기 직전 은신중이던 광주시내 모 아파트 13층 케이블 선을 타고 내려가다 뛰어내린 후 현장에서 이씨의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zitrone@yna.co.kr

(끝)

김준배씨 폭행경찰 고발**의문사진상규명위, 공소시효 유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97년의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당시 김씨를 폭행했던 경찰 이모(32)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26일 "지난 5일 이씨에 대해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고 현재는 광주고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조사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고발조치가 가능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일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던 김씨가 지난 97년 경찰의 몇에 걸려 검거되기 직전 은신중이던 광주시내 모 아파트 13층 케이블 선을 타고 내려가다 뛰어내린 후 현장에서 경찰 이씨의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연합

인혁당 사건 관련 보도

바로잡습니다

18일자 31면 '인혁당 사건 다시 법정 선다' 기사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재심청구권을 가진 것으로 보도된 대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직접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만 재심 청구의 직접 권한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고문조작'과 국회가 해야 할 일

박정희 정권이 8명을 전격 처형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중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장석구씨의 사인을 조사하면서 중앙정보부가 치밀한 '각본'에 따라 고문수사를 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1차 사건 발표 때부터 조작혐의 시비가 있었다. 1차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4명 전원이 기소포기에 합의할 정도였다. 실제로 당시 재판부는 인혁당 결성을 인정하지 않고 '서클조직' 정도만 인정했다. 인혁당 자체에 실체가 없으므로 74년 재건위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그런 심증이 당시 수사관들의 '용기있는 진술'로 '물증'을 얻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사팀장이 "물건(조직사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한 수사관의 증언은 사건의 성격을 분명하게 입증해준다.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 수사기록 어디에도 조직 결성의 물적 증거가 없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공판조서까지 변조됐음이 확인됐다. 비인간적인 각종 고문을 자행했다는 수사관의 고백에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의 서명까지 확인했다는 수사팀장의 진술은 정권 차원에서 조작됐다는 혐의를 짙게 한다.

문제는 이제 겨우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상황에서 진실이 다시 묻힐 위기에 몰렸다는 데 있다. 군사독재 시절의 중정과 분명히 달라야 할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비협조적이어서 장씨가 죽은 구체적 이유조차 밝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규명위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16일이라는 활동마감 시한에 쫓겨서다.

여기서 거듭 국회에 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억울한 죽음들이 잇따라 밝혀짐에도 의문사진상규명위 시한을 연장하는 법개정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기 바란다.

2002. 9. 13

“인혁당사건, 중정이 조작”

의문사위 발표…국가기관 첫 확인
당시 수사관 등 고문자행 진술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던 '민 청학련'을 배후 조종해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국기를 건설하려했다는 혐의로 23명이 구속되고, 이 중 8명이 사형된 인민혁명당재건위(인혁당)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인혁당 사건이 정권 안보를 위한 중정의 조작극이었다는 의혹은 여

러차례 제기됐으나,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15면

의문사위는 이날 "당시 인혁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중정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고문을 통해 증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인혁당 수사과정에서 강령, 규약 등 조직

결성 증거는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수사관 이아무개씨는 의문사위 조사에서 "중정 수사팀장인 윤아무개씨가 수사관들에게 '물건(조작사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 '뺑뺑이'(고문)을 들렸는데 피의자 대부분이 겁에 질려 부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주무를 맡았던 경찰 수사관 전아무개씨도 "전기고문하는 것을 봤다"며 "피의자들이 매우 고통스러

워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다. 위원회는 또 "당시 재판정 교도관들을 조사한 결과, 재판을 담당한 군사법원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불법적 고문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판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 유가족과 관련자 20여명은 조만간 변호인들의 협의를 거쳐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2002. 9. 13

의문사위 “인혁당 사건 中情서 조작”

당시 검사 “반국가단체 증거 없었다” 진술

1964년과 74년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된 1·2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4년 인혁당 관련자를 숨겨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승진 장석구(당시 47세)씨 사건을 조사한 과정에서 인혁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중정이 반공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조작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규명위는 인혁당 사건조작의 증거로 당시 담당 검사와 중정 인사 등의 진술내용을 공개했다.

64년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관련자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한 인사는 규명위에서 "인혁당 사건으로 체포된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며 "결국 속죄 검사 한명이 중정에서 넘긴 의견서를 그대로 베껴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또 74년 당시 군 경찰관으로 참여했

던 인사는 "증정의 기록을 검토했지만 반국가행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에 전직 중정 직원은 "74년 다른 증정 직원들이 인혁당 관련자들을 기록하게 고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명위는 "당시 증정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비협조로 張씨의

한 사건. 당시 13명에게 반공법 위반혐의가 인정됐다. 일부는 유신반대 운동이 거세진 74년 다시 인혁당 사건관련 피해자 가족 10여명은 이날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된 만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박경희 정권이 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한 재야인사 47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국가 전복세력'으로 간주해 체포

남궁목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2002. 9. 13

74년 유신체제 유지 희생양 필요 非유명인 8명 지목 전격 사형집행

‘인혁당 재건위사건’이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 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으로 규정해 관련자 8명을 사형에 처한 사건이다.

인혁당 재건위란 1964년 발생한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이 당시 재건을 기도했다며 중정이 붙인 이름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은 64년 8월 중정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 반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해 일당 57명 중 41명을 수배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검 검사 3명이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에 반발해 사표를 내기도 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만에 인혁당은 중정에 의해 민청학련의 배후로 다시 지목됐으며 중정은 1차 인혁당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인혁당이 '재건'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1차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신직수(申植秀)씨와 수사담당 중정 요원이던 이용택(李龍澤)씨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 각각 중앙정보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중정 6국장으로 등장했다.

이들이 이끄는 중정은 민청학련에 연루된 이철(李哲), 유인태(柳寅泰), 이강철(李康哲)씨와 친분이 있던 여정남(李正南)씨(전 경북대 총학생회장)를 매개로 혁신계 인물들을 수사했고 최종적으로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고 결론내렸다.

10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인민혁명당 사건 일지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8월 14일 중정, 1차 인혁당 사건 발표
1965년 9월 5일 인혁당 관련자 26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9월 21일 대법원, 6명에 징역 1년형 선고하고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974년 4월 25일 중정,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배후 애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판결. 사형 8명, 무기 7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5년 4명
4월 9일 8명 사형 집행

및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253명 중 이철, 김지하(金芝河)씨를 비롯한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75년 2월 대부분 석방됐지만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3명은 모두 석방에서 제외됐다. 75년 4월 8일 주요 관련자인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도예종, 이수병씨(일본어 학원 강사) 등 8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판결 20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6시 형이 집행됐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의 사형이 집행된 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유신체제 2년째에 접어들어 격렬한 반체제 운동에 직면한 유신정권은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유명 인사 대신 주목을 덜 받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택했다고 인권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해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人革黨재건위 사건 중앙정보부가 조작”

**의문사규명위 당시 수사관4명 진술확보
선고 바꿀 명백한 증거… 재심 청구될듯**

1974년 중앙정보부가 “북의 지령을 받은 지하공산조직으로 민청학련의 배후조작”이라고 발표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2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과 피의자들이 수감됐던 교도소의 교도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정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을 자행했고 피의자 신문조사와 진술조사를 위조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에서 8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됐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은 있었지만 국가기관이 수사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조작 사실을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경찰 수사관 4명 모두 ‘자백’ 이외에 조작결성 판

권 증거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도 지하당 결성에 관한 증거 자료는 없었다”며 인혁당 재건위 조직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진상규명위는 “중정 수사팀장인 윤모씨가 수사관들에게 ‘물건(조작 사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일이 새로 나올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는데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상당 부분이 예상된다”며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중정 수사팀이 고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시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정 수사관들이 수시로 입회했고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 지하보일러실로 끌고 가 고문을 했으며 검사가 물으면 혐의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는 당시 수사관들 의 진술도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재판을 맡은 군사법원 재판부도 피고인이 부인한 사

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고문에 관한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판 조사를 위조했으며 죽음을 앞두고 한 유언마저 조작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가 날조되고 재판 과정에도 위법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당시 수사관과 변호사의 진술도 함께 공개했다.

김준곤(金浚坤) 상임위원은 “기존의 형 선고를 변경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올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는데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상당 부분이 예상된다”며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중정 수사팀이 고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시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3선 개헌이 있었던 1969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규정한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인혁당재건委 사건 중앙정보부가 조작”

의문사委 “74년 당시 고문·조서 위조 드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지난 74년 북한의 지령으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고 12

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작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보부는 당시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해 국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했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피의자 신문조사와 진술조사 등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중정 수사팀장인 윤모씨가 ‘물건(조작 사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전 중정간부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 보일러실에서 뻥뻥이(고문)를 둘렸고 이후 피의자들은 전혀 부인하지 못했다”는 당시 수사관 이모씨의 진술을 공개했다.

의문사위는 “피의자들은 고문 후 유증으로 제대로 견지도 못했고 심

지어 앉아 있지도 못했다. 고문으로 탈장이 되어 있었고, 물고문으로 폐농양증이 생겨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왔다”는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 전모씨의 진술도 공개했다.

중정은 당시 사건조작의 주체를 감추기 위해 경찰이 진술조사를 작성토록 했으며, 한 수사관은 “검찰에서 피의자 진술을 받을 때 중정 직원들이 상시 입회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기계적으로 조작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의문사위는 군사법원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부인한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고문에 관한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판 조사를 위조했으며, 죽음을 앞두고 한 유언마저 조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재신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유신반대 투쟁 배후 지목… 8명‘사형

인혁당재건委 사건이란

인혁당 사건이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관련자 23명을 구속하고 이 중 8명을 사형에 처한 사건. ‘인혁당 재건위’는 1964년 8월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이 달 재판을 기도했다며 중정이 물인 이름이다.

중정은 당시 “민청학련 연루자인 이철(李哲) 유인태(柳寅泰)씨와 전

분이 있던 여정남(전 경북대 총학생회장)씨를 중심으로 한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조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을 합쳐 총 263명이 구속됐다. 75년 2월 이 중 대부분은 석방됐지만 인혁당 관련자 23명은 끝내 제외됐다.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기자)·도예종·이수봉(일본어학원 강사)씨 등 8명은 같은 해 4월 8일 사형선고를 받고, 선고 20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6시 형이 집행됐다. /安容均기자

유신 '공작살인' 국가서 첫 인정

■ 의문사건이 밝힌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 전모

의문사규명위원회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발표 내용을 수사부터 재판까지 부문별로 간추린다.

●조작설의 증거 유·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조작설과 관련한 증거가 없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공식 출판 서적, 학생들 선언문,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관련 자료 등이 있을 뿐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강령 기록 등 지하당 결성과 관련된 물증이 없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기한 고문의 실상 증정 수사관들과 증정에 파견된 경북도경 등의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폭동이 (야전침대봉 등) 짐벌, 통닭구이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고문을 자행했다고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증언했다.

서울시경 소속 경찰 진○○은 국방색의 애전용 전화기로 피의자를 전기고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북도경 경찰 이○○은 물고문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지하 보일러실은 고문을 하는 장소라고 진술했다.

●각본에 의한 수사 수사 미루리 단계에 서 증정에서 감작스럽게 조사했다. 당시에 증정간부가 1차 인혁당 관련 기록을 보고 있었으며 증정에서 짜놓은 각본에 맞춰 조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팀장인 윤○○이 수사관들에게 "물건(조사사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일도 있다고 진술했다.

●고문을 통한 피의자 자백 강요 수사관 이○○, 신○○은 증정의 시지가 사실관계 및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 많아 있었지만 윤○○이 지시하면 무조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처음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증정 수사팀이 고문을 한차례 하면 그 다음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시인조사를 작성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의문사건상규명위원회의 김준곤 상임위원이 12일 오후 지난 7년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 숨진 참석구씨 사건 증언발표를 하고 있다. ■한경

中情, 피의자 신문조서 허위기재
재판부, 피고인진술 반대로 기록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당한 8명	
이름	당시 직업
김시나이	당시 직업
서도원	대구애월신문 논설위원
조예증	경북 영주군 교육감
하재원	43
이수령	36
김용열	40
우종선	44
송상진	47
여정남	30

●검찰관 조사 때 증정 수사관이 참여 피의자들을 고문 당시 수사관들, 검찰서기, 피의자들은 검찰관 조사 과정에 증정의 수사관들이 수시로 입회하였으며 "혐의를 부인하면 6국 지하보일러실로 끌려나가 고문을 당하였고 검사가 물으면 예리하고 답할 것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했다. "고 진술하고 있다. 서울시경 소속 경찰 나○○은 '대구팀이 증정에서 검찰관과 같이 조사를 한 것은 증정에 있었던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목적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조작설의 증거 유·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조작설과 관련한 증거가 없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공식 출판 서적, 학생들 선언문,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관련 자료 등이 있을 뿐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강령 기록 등 지하당 결성과 관련된 물증이 없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기한 고문의 실상 증정 수사관들과 증정에 파견된 경북도경 등의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폭동이 (야전침대봉 등) 짐벌, 통닭구이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고문을 자행했다고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증언했다.

서울시경 소속 경찰 진○○은 국방색의 애전용 전화기로 피의자를 전기고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북도경 경찰 이○○은 물고문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지하 보일러실은 고문을 하는 장소라고 진술했다.

●각본에 의한 수사 수사 미루리 단계에 서 증정에서 감작스럽게 조사했다. 당시에 증정간부가 1차 인혁당 관련 기록을 보고 있었으며 증정에서 짜놓은 각본에 맞춰 조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팀장인 윤○○이 수사관들에게 "물건(조사사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일도 있다고 진술했다.

●고문을 통한 피의자 자백 강요 수사관 이○○, 신○○은 증정의 시지가 사실관계 및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 많아 있었지만 윤○○이 지시하면 무조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처음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증정 수사팀이 고문을 한차례 하면 그 다음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시인조사를 작성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뒤늦은 규명 땅속 선배에 죄송"

■ '인혁당재건위' 죄없는 옥살이 7년 임구호씨

"오로지 민주화의 통일을 외치다 행장의 이슬로 사라진 선배들이 오늘 너무나 그립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죄 없이' 7년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던 임구호(林久鎭·54)씨는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28년간 악동에 시달려

임씨는 12일 28년만에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독재정권의 조작사건으로 인정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들었다. 그리고 길고 긴 타날을 지나온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국가가 진실을 인정할 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당시 숨진 민주화운동 선배들과 모진 고문과 수감생활을 겪던 동지들의 한이 이제야 풀리나 봅니다."

1974년 4월30일 오후 3시쯤 대구에서 학원강사를 하던 임씨의 집에 종

양정보부 요원 3명이 들어닥쳤다. 영문도 모른 채 증정 대구분실에서 끌려간 임씨는 간단한 기초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서울 남산의 증정 분실로 이송됐다.

증정 요원들은 임씨에게 강요한 범죄事實은 단 두 가지였다. 하재원이 작성한 북한의 대남방송 청취 노트를 보았느냐는 것과 데모를 주주했느냐는 것이다. 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하재원씨는 당시 서도원, 여정남씨 등 8명과 함께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75년 4월9일 사형당했다.

74년 영문모른채 증정 이송

자백을 거부한 임씨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물고온 '전기의자' 등의 고문이 뒤따랐다. 결국 고문을 견디다 못해 요구하는 대로 자백했다. 재판과정에 이를 다시 부인 했지만 재판장에서 최후진술은 차택되지 않았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7년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피해자 임구호씨

가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며 웃으리라는 괴리를 말하고 있다.

●이종원기자 jongwon@kdaily.com

죄목조차 제대로 모른 채 수감생활을 하던 임씨는 공소장을 보고서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불법하기 직전에 나왔던 인혁당 사건 증언발표 때만 해도 내 이름이 빠져 있었고, 당시만 해도 후배들에게 시위를 자체화하고 당부하는 입장이어서 내가 사건에 연루될 줄은 꿈에

도 몰랐습니다."

경북대 재학 시절부터 인혁당에 연루된 희생자들과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임씨는 "당시에는 아무리 정당한 민주화운동이라도 지하운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순수한 민주화운동 선후배의 인간관계를 체제전복 조직으로 엮고, 사법 살인까지 감행했던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불렸다.

전기고문 끊이거 허위 자백

임씨는 82년 3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사로 풀려나왔다. 출소 직후 사형당한 선배 서도원씨의 딸 서전희(50)씨와 결혼, 다시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다.

해마다 사법 살인이 일어난 날이면 악동에 시달린다는 임씨는 "이제 이 악동에서 풀려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아직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생각하면 웃을 수만은 없다."며 씁쓰레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인혁당 재건위’ 사건 중앙정보부서 조작

의문사위 “고문으로 증거·조서 허위작성”

지난 1974년 당시 유신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유신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국가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됐다.

▶ 관련기사 2·3·7·31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지난 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사망한 장석구(당시 48세)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고문에 의한 증거조작,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변조, 공판조서 허위작성, 정

수사과정에서 잔혹한 고문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규명위는 “증정 수사관들과 증정에 파견된 경북도경 경찰관들이 봉동이 쪽질,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가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관들과 구치소 교도관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에 따르면 증정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뿐 아니라 조사 장소와 조사일시를 허위로 기재 했으며 검찰 조사 때도 수사관을 참여 시켜 피의자를 협박·고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2면으로 ▶

“명예회복 다행… 재심 청구”

■ 인혁당 재건위사건 유족들

“지난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면서 피해 유가족의 재심 청구와 명예회복 요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건 관련자와 유가족들은 12일 규명위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관련자의 무죄를 입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발표 1년 만인 75년 사형당한 하재완씨의 아내 이영교(68)씨는 “30년 가까이 ‘간첩의 아내’라는 표리표를 달고 살아왔다.”면서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죽은 남편과 가족의 명예가 회복된 것만도 다행”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씨는 남편이 불잡혀 간 뒤 재야·종교단체를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증정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고 했다.

이씨는 “증정 수사관들이 이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남편이 공산주의자임을 시인하라.’고 강요했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전주교인권위원회의 문정현 신부의 갑회도 남다르다. 문 신부는 지난 75년 4월9일 인혁당 관련자들의 사형집행 소식을 듣고 서울 서대문 구치소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 중 하나다. 문 신부는 “당시 구치소 근처 응암동 로터리에서 사형당한 송상진씨의 시신을 빼앗아 가려는 경찰들과 싸우다 부상을 당해 5급 장애인이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규명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준 지금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사건 관련자와 유가족들은 지난 98년 11월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를 결성한 뒤 꾸준하게 추모행사와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 왔다. 99년 4월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갖고 25주기 추모문화제와 영화제 등을 열었다.

●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 국정원 표정

“특별한 입장없어 적극 협조할 것”

국가정보원은 12일 의문사진상규명 위가 인혁당 사건을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자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국정원측은 진상규명위 발표 직후 긴급 회의를 갖고 언론 논평을 넓지 여부 등을 포함,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국정원측이 내놓은 결론은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은 그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했다.”면서 “의문사규명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 국정원측이 별도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의문사 규명위원회가 관련자 주소 파악 등 추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인혁당 진상규명 이제 시작 조서만 봐도 中情 조작 확실”

■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 서중석 성대교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앙정보부의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공개돼 본격적인 연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8년만에 중정의 조작국이라고 밝힌 ‘인민혁명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까지 치렀던 성균관대 서중석(54·사진) 교수는 13일 “증언 중심으로 이뤄진 의문사위 조사는 극히 일부분의 진실만을 밝혀냈다”며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4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여지껏 사건자료를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74년 서울대 국사학과 4학년 재학중 민청학련 사태인사담당책으로 겸직된 서교수는 서울 남산의 중정 조사실로 끌려가 1개월 반동안 물고문과 봉동이 짚질, 잠안재우기 등 갖은 고문을 당하며 7차례 조서를 작성했다.

서교수는 “말이 진술조서지, 수사관들이 미리 작성해놓은 것을 인정하고 고문하는 식이었다”며 “당시 진술조서만 봐도 이 사건이 조작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개인별로 7~10차례에 걸쳐 조서를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거나 ‘주요시설 방화 등을 통해 국가전복을 노렸다’는 식의 내용이 추가됐다.

처음엔 민청학련이 인혁당 재건위를 사주했다는 식으로 조작되다가 나중엔 인혁당 재건위가 북의



발표했다. 의문사위는 당초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옥사한 장석구씨 사망사건을 조사했으나, 장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한편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와 유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석기자
greenleaf@munhwa.co.kr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74년 인혁당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발표한 12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공동대표 문정현(기운데)선부와 유가족들이 의문사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인혁당 진상규명 이제 시작
조서만 봐도 中情 조작 확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란

‘인민혁명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 관련자 8명이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지 20여시간 만에 처형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사법살인’으로 비난받은 사건이다.

당시 중정은 “도예종씨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

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23명 중 8명이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은 판결이 있은 뒤 하루도 안돼 집행됐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비상식적인 사형집행을 비판하며 이날을 ‘사법살인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국제 앤네스티도 ▲변호인측 증인이 한 사람도 채택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중 한 명만 방청을 허용받는 등 재판이 통제된 점 ▲관계당국이 공식적인 재판기록 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한 점 등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인혁당사건은 中情조작극”

가혹 수사·진술 위조… 국가전복 기도 증거없어

의문사건, 첫 공식확인

유신정권 때인 1974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조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74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생시위를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8명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뒤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이 정권안보를 위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국가기관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1면)

진상규명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증정은 당시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규명위 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사와 진술조사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특히 피의자신문조사와 진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증점이 파견 경찰관을 동원해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자행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모진 고문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하재완 씨 등 관련자들이 탈장과 폐농양 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재판을 담당한 군사법원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사실을 정반대로 기록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가운데)와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인혁당 사건 발표 후 의문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

하거나 불법적 고문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피고인들의 증인 신청을 한 차례도 받아주지 않는 등 재판과정을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혁당 사건은 당시 증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수사팀장 윤모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담당 수사관도 “이모 국장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진술을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강은기자 kelee@sgt.co.kr

유신 정치공작 실제 일부확인

‘인혁당사건’ 발표 의미

12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는 당시 사건을 무려 27년만에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 8명이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뒤 20여시간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으로 비난받았던 사건이다.

사건 당시 증정은 “도예종씨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당시 민

당시 사형선고 20시간만에 刑 전격집행

명예회복 길열려… 대책위 “재심 청구”

정학련을 배후 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23명 가운데 8명이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하루도 채 안돼 75년 4월 9일 형이 집행됐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정했으며, 유가족과

련, 감옥에서 사랑한 장석우씨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실규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여곡절끝에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유가족과 관련단체 차원에서 제기되던 각종 의혹들을 국기기관으로 처음으로 확인하는 계기를 올렸다. 인혁당 대책위측은 “규명위에 의해 이 사건이 밝혀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재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재심청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신청과 사건조사 진정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범준기자 weiv@sgt.co.kr

“27년 맷힌 응어리 풀었다”

유족들 눈시울 적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인혁당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12일 지난 27년간 가슴을 치며 살았던 유가족과 당사자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응어리를 풀게 됐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3선개헌 반대운동, 부정선거 반대 등의 활동을 벌이다 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68)씨는 “지난 27년동안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고 말해왔지만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았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죽은 남편을 볼 낮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또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어린 자식들까지 경찰

이 감시하는 등 부모로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며 “이렇게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사랑스러워하며 잘 자라준 5남매가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인혁당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육고를 치렀던 임구호(55)씨도 이날 의문사위의 사무실에 나와 공식발표 결과를 담담히 지켜봤다.

임씨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의문사위 역시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조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것도 의미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독재의 잔재를 씻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범준기자 weiv@sgt.co.kr

피의자들 대부분이 정성적으로 검지 않았다”며 “일부 인사는 물고문으로 폐능양증이 생겨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나왔다”고 증언했다”이라며 끔찍한 고문은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 것이다.

“인혁당 사건은 中情 조작극”

의문사위 밝혀… 물고문·전기고문등 자행 진술강요

1974년 중앙정보부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이 민형학련을 배후 조종해 유혈 폭력 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발표, 8명을 사형에 처했던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완전 조작됐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 확인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보부(당시 부장 신직수·申植秀)가 조직결성의 기본 증거인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감청기록 등을 전혀 없이 라디오, 서적, 학생 선언문 파악으로 지하당의 존재를 조작해냈다고 밝혔다.

고문실태

이 과정에서 증정은 피의자들에게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참혹한 고문을 자행했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인혁당 피의자들이 수감됐던 교도소 교도관들은 “온몸에 피멍이 든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공동대표 문정현(가운데 앉은 이)신부와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인혁당 사건 발표 후 의문사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연합

前증정간부 “수사팀장이 조작 지시” 中情실체 감추려 경찰이 조서 작성케 당시 변호사·교도관 “공판기록도 조작”

피의자들 대부분이 정성적으로 검지 않았다”며 “일부 인사는 물고문으로 폐능양증이 생겨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나왔다”고 증언했다”이라며 끔찍한 고문은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 것이다.

전 총장 간부는 “증정 인혁당 재건 위 사건 수사팀장 이었던 윤모씨가 ‘물건(조작사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위원회에 진술했으며 당시 수사관도 “윤씨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신을 비방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면서 “처음에 거부하다가도 고문을 하면 결국 시키는 대로 불었다”고 밝혔다. 특히 증정은 사건조작의 주체를 감추기 위해 경찰이 진술

조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작성장소도 증정이 아닌 구치소, 경찰서 등으로 조작했다. 당시 수사관은 “직원들은 기록에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장 윤씨도 ‘인혁당 재건위는 경찰이 조사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건이 경찰에 넘어간 뒤에도 증정의 간섭은 계속됐다. 한 수사관은 “경찰에서 피의자 진술을 받을 때 증정 직원들이 상시 입회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기계적으로 조작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공판기록에는 피의자들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기를 건설하려 했느냐”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인

■ 인혁당 사건 관련 일자
• 1964년 대일글목외교반대 시위 확산, 증정,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발표(11월)
• 1965년 1차 광주 피의자 2명과 2, 3년 징역형, 나머지 11명은 무죄.
• 2차 관찰 6명 징역 1년, 그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
• 1973년 12월 장준하 폐기한 선생 출신 국민기현청원운동 진행
• 1974년 긴급조치 4호 발표, 민생화현을 범죄단체로 규정 증정, 민생화현 폐포로 제2차 인민혁명당 (인혁당 재건위) 지목
• 1975년 인혁당 재건위 대법원 판결, 8명 사형, 1명 무사, 16명 무기징역·징역·20년·징역 15년, 3명 구속정지*

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것 역시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 과정을 지켜본 변호사들과 교도관, 피의자 가족들은 “피고인들이 부인해도 기록은 정반대로 이뤄졌으며, 피고인이 고문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은 모두 누락됐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이러한 공판기록 조작에 따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의자

8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는 한정사상 죄악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재심 신청 움직임

의문사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로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만한 증거들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여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인 재심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혁당 대책위는 이날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을 청구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그러나 “조사 기간이 짧아 이 사건에 관련된 장석구(張錫九·당시 46세·대구일보 기자)씨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인혁당 사건 중정 '조작극'

의문사위, 국가기관 처음으로 공식확인

"국가전복 기도 등 증거 전혀 없어"

신문조사·진술조사 위조통해 조작

지난 74년 북한의 지원으로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연행돼 8명이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중정은 당시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을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사와 진술조사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신문조사와 진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중정이 파견 경찰관을 동원해 구타, 몸통이 찡질,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자행했다"며 "고문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하재완씨 등 관련자들은 탈장과 폐능양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의문사규명위에 따르면 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사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 수배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이유로 구속, 육중에서 사망한 장석구씨 사건과 청와대의 역할, 상부 지시라인 등을 전혀 조사를 진행시키지 못했다"며 "국회에 상정된 법개정안이 통과돼야 장씨의 사인과 근본적 원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혁당 진상규명 및 평화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인혁당 재건위 조작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조작된 사건임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재심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n.com

사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계기 삼자

심 기회마저 빼앗는 바람에 '사법 살인'이라는 국제적 비난까지 받았었다.

인혁당 사건은 군사독재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다. 광기의 시대에 비뚤어진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28년이나 지났지만 공포와 전율을 금할 수 없다. 차분하게 공권력의 불법성을 밝혀내는 한편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 행태가 과연 이 사건뿐이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의문사위 발표는 인혁당 사건 진상 규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간 발표인 데다 조작을 입증할 확실한 근거나 증거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서둘러 단정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문사위마저 지난치게 서두르다가 흡결을 남긴다면 이는 공권력의 또 다른 횡포가 될 수 있다. 재심 등의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인혁당 사건 재심 통해 명예회복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우리가 지나온 어두웠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관련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발표할 당시부터 유신체제 수호를 위한 시나리오에 꿰맞춘 인상을 강하게 주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었고 국가체제에 대해 비판적 또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이 극형을 받았다면 잘못된 일이다. 1차 인혁당 사건도 서울지검 검사들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쓰는 바람에 당직 검사가 기소를 하는 편법을 썼다.

인권 보호와 증거 재판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로서 설사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보부는 1차 인혁당 관련자들을 10년 만에 다시 끌어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

작하면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자행했다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혔다. 검찰에서도 피의자들이 부인하면 증정 수사관이 지하실로 데려가 고문을 자행했다고 하니 증거 능력이 없는 강압에 의한 진술조서로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살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가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교수 종교 인들이 연루된 민청학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민심의 호응을 얻기 위해 붉은 색깔이 도는 배후조직과 연계시키는 시나리오를 썼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 사건 관련자 8명을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내려진 지 20시간 만에 처형한 것은 조작 수사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국가살인이라고 할 만하다.

재심 등을 통해 인혁당 관련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독재정권 시대에 이루어진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회는 16일 종료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줘야 할 것이다.

‘人革黨 사건’의 진실을 찾아서

유신치하인 1974년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정에서 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20여시간 만에 처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 이었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보다 확실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할 일이다. 수십년 동안 장막 속에 가려져 있던 인혁당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 당대사(當代史)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의문사위는 법정에 제출된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여러 군데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의자들이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받았고, 재판부마저 피고인들이 부인한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공판조서를 조작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누구는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탈장이 됐고, 누구는 물고문에 의한 폐농양증으로 기침을 할 때마

다 피가 배어 나왔다는 등의 증언들은 그 말 자체로서 우선 듣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무엇보다 사형선고를 확정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이튿날 새벽 전격적으로 형을 집행해버린 것은 그것대로 또 하나의 섬뜩함과 전율을 느끼게 만든다.

인혁당사건이 민청학련의 반유신운동을 반국가 행위로 색칠하기 위해 억지로 덮어 써운 것이라는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의문사위의 발표는 그런 논란을 정식으로 공연화(公然化)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공소시효가 오래 전에 끝난 이 사건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파헤치기란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렇지만 찾아보면 전혀 길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이 스스로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고, 특별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현대사가 언제까지 이 꺼림칙한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인혁당 재건위사건’ 새달 재심청구

유가족등 곧 대책위 소집
의문사위 “39개 사건 미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유가족과 관련자들의 재심청구가 이르면 다음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형태 변호사는 13일 “이달 안으로 의문사진상 규명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10월중 대책위를 소집, 재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또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 병을 얻어 사망한 장석구씨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16일 가질 예정이다.

했다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3일 여야간의 이견으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14일부터 시흘간 하루 두 차례씩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미결정 사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장준하·이철규·박창수 사건 등 39건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상당수는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촉박한 조사시 한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고문조작-의문사 끝까지 밝혀야

박정희 유신정권이 도예종씨 등 8명을 간첩 혐의로 처형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작극이었음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앙정보부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잔혹한 고문으로 간첩 혐의를 써우고, 검찰과 법원까지 조작극의 들러리로 삼은 폭압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라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30년간 어둠에 묻혀 있던 진상이 당시 수사관들의 양심적인 증언으로 밝혀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인혁당 사건은 당초 조작 의혹이 크게 제기됐던 사건이다. 박정권은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려다 실패하고, 10년 후 민청학련을 비롯한 학생-지식인 등의 유신반대 운동으로 수세에 몰리자 상황 반전을 노려 재차 조작극을 벌인 것이다. 더욱이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 8명을 형획정 후 불과 20시간

만에 전격 처형한 것은 전례없는 것으로서 ‘사법살인’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인혁당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범죄로 확인된 만큼 이제 재수사와 재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인혁당 사건처럼 암울했던 시대에 발생했던 술한 의문사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좌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 규명작업이 정치권의 비협조로 중단위기에 놓여 있다. 의문사규명위가 접수된 80여건중 절반을 미결로 남겨둔 채 오는 16일 조사활동을 마치게 돼 있는 것이다. 국회는 위원회의 시한 연장 및 조사권한 강화, 공권력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검제 도입 등을 담은 의문사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작업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가범죄로 판명된 '인혁당' 조작

1974년의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8명은 결국 법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극의 희생이었던 셈이었다. 뒤늦게나마 국가기관에 의해 관련인의 혐의를 함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지난 28년 동안 침묵과 은폐를 고집해온 가해자들과 그들이 속했던 기관의 뻔뻔함이 너무도 개탄스럽다. 오래 전부터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국민의 마음속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사법부는 앞으로 당사자와 가족이 제기할 재심과정을 통해 간접의 누명을 뒤집어썼던 사람의 신원(伸冤)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이 당한 고통의 일부나마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지만 국가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국가범죄'에 대한 처리

역시 현정부의 의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듭되는 당부지만 오는 16일로 시한이 끝나는 의문사 진상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데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기왕에 의문사 특별법을 개정하는 김에 활동시한의 연장 외에 의문사진상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저질러진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을 배제, 영원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다시는 이땅에 공권력에 의한 무도한 폭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첨경이다. 또한 인혁당 사건 말고도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수많은 의문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몇몇하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진정한 과거청산이다, 화해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혁당사건 다시 법정 선다

의문사委, 용공조작등 증거 일부 확보 "곧 재심 청구"

군사정권의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으로 꼽히는 1974년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7일 "재판과 수사기록, 진술서 등을 접검해 당시 유죄판결의 증거가 허위라는 단서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조작이나 피의자 고문 등의 증거가 나오는 대로 법원에 조만간 인혁당 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죄악의 판결로도 기록되고 있는 인혁당사건과 관련된 고문, 조작 등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용공조작 증거 일부 확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증거 조작이나 위증, 피의자 고문 등이 드러날 경우 재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심에 앞서 증거 조작 등을 인정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먼저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규명위의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규명위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조사에서 용공조작의 증거와 진술을 일부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나 가족 등과 연대해 인혁당사건을 법정에 세우

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파견경찰로 중앙정보부 남산분실에서 인혁당사건 연루자 조사에 참여했던 나모씨는 규명위 조사에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지도 모른 채 불려갔으며, 피의자가 세뇌교육을 받은 듯이 '지하당을 조직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문장을 물어했다"고 진술했다. 규명위는 또 인혁당 사건 수배자를 숨겨준 혐의로 수감, 75년 병사한 것으로 발표됐던 장석구(당시 48세)씨 사건을 인혁당 관련 의문사로 조사 중이다.

실제 조사주체 규명 어려움

규명위는 그러나 당시 수사 지휘부와 일선조사관이 철저히 분리된 채 혼조직식으로 조사가 진행돼 실제 조사 담당 주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혁당 연루자로 조사를 받았던 전 모씨도 "직접 고문에 참여했던 사람은 조사관과 달리 신원을 알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규명위 조사는 현장실습 중인 사법연수생들까지 자원봉사형식으로 동원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인혁당 사건의 실체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확답 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증거 등



함께 반독재투쟁을 벌였던 동지들이 지난해 9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고 김용원씨 묘소(경남 청안군)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묵념하고 있다.

● 인혁당 사건

1964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이 치주한 대규모 저항조직에 의해 국가 전복기도가 있었습니다. 발표한 사건이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그러나 안전반제에 의해 고문사실이 알려지고 당시 검사들이 사퇴하는 등 혼란을 겪으면서 13명이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치명되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은 74년 인혁당이 다시 세력을 펴 민족학련이란 조직을 배후 조종,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 뚜렷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채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검거자 중 8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20시간만에 기록에 제거되거나 면벌로 처리됐습니다. 당시 사건 연루자가 1,024명에 이른다고 발표됐습니다.

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도 있지만 재심신청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 당시 희생자들에게 명

예회복의 기회를 열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2002. 9. 15

人革黨재건위 사건 출소한 15명 중 5명

고문후유증 않다 사망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1982년 출소한 15명 중 5명이 각종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4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82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재권·이태환·정만진·유진곤·조만호씨 등 모두 5명이 80년대 중반에서 지난해까지 50대 중반~70세의 나이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도예종씨 등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지 20시간 만인 75년 4월 8일 오전 6시에 형이 집행됐었다.

의문사위는 “이들이 출소 직후부터 공통적으로 대인기피증세를 보였고, 구속 이전에 없었던 고혈압·정신 질환·심장병·척추장애 같은 질병에

시달렸다”며 “고문으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전기고문을 많이 당한 전재권 씨는 이미 구치소에서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고 고혈압을 앓았으며, 출옥 4년 만인 지난 86년 잠자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남기고 58세에 돌연사했다.

98년 58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정만진씨도 물고문을 심하게 당했으며, 출옥 후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헉헉’ 하며 심장이 답답한 증세를 보였다고 의문사위는 설명했다.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은 이태환 씨는 출소 후 오른쪽 팔과 엄지발가락에 마비증세가 오고, 청력이 심하게 떨어졌으며 말을 하면 목이 심하게 아파 실어(失語)증세를 보였다. 이씨는 2000년 70세의 나이에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은 “출옥 후 ‘그놈들은 인간 백정이었다’는 말을 했으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헛소리를 했다”며 “고문당하기 전에는 마른 스타일에 아주 건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진곤(1937년생)씨와 조만호(1935년생)씨도 교도소에서부터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아 줄곧 누워 있었으며, 80년대 중반에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한편 생존자 중에서도 임구호·강창덕·전창일씨 등이 고문으로 인해 척추장애 5급 판정, 어혈, 대인기피증 등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고문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다”고 말했다.

/鄭佑相 기자 imagine@chosun.com

2002. 9. 16

조작논란 인혁당재건위 사건

당시 대법관사 “소신대로 판결”

조기 사형집행엔 관여안해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린 당시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들은 “기록을 토대로 법관의 양심과 소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A 전 대법원 판사는 15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고 수사기록에 따라 판결했으므로 당시 판단이 옳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B 전 대법원 판사도 “유죄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그다지 큰 마찰이나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법원은 1, 2심과는 달리 법률적인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기록이 허위일지라도 그를 근거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사법 살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집행하는 쪽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 한 것일 뿐 판사들 소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던 이일규(李一珪) 전 대법원 판사는 “하급심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판사들이 모두 동의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27년 전 사건을 지금 밀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했던 12명의 대법원 판사 중 3명은 사망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의문사위 “인혁당재건위 5명 고문후유증 숨져”

받은 정씨는 98년 58세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또 고문을 받은 이씨는 팔다리 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다가 2000년 70세에 뇌출혈로 숨졌다.

이 밖에 유씨와 조씨도 교도소 수감 생활 때부터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아오다 80년대 중반 모두 사망했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생존자 중 일부도 고문으로 척추장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덧붙였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다시 보는 '人革黨 사건'

의문사委 “중앙정보부가 수사·재판 개입”

당시 大法官



◇ 판결은 내려지고… 대법원 천원 항의체(재판장 민복기·閔復基)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를 포함한 민성학련 관련 피고인 38명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형학련' 수사가 밖단이 됐다. 1972년 12월 유신헌법 공표 이후 대학기를 중심으로 유신반대 대보가 확산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간접조치를 통해 반정부 인사들을 군사기관에 회부했다. 특히 74년 봄 사설대 경복대 전남대 등 대학기에서는 대대적인 유신반대 시위를 계획 중이었고, 정부는 긴급조치 호령령도, 시위를 준비 중이던 '민형학련'을 민족단체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384명을 경거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민형학련 연부자인 이철우(李哲宇·전 국회의원), 유안태(柳安泰·이씨와 친분이 있는 여성당원), 김용우(金容祐·민족당원으로 만·인혁당 재건위)가 폭력 저력을 받아 민형학련을 배후 조작했으며, 이들은 정부를 통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유신시대 사법 살인”

당시 수사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38명이 구속됐으며 이 중 서도원 대장 대·부대장신분 기자, 도예종, 이수봉(李壽峯)이었고 김상우(金相祐), 우승선(吳承善), 여정남(李正南) 등 8명이 군사대관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지 20시간 만에 집행됐다.

이어 사법살해위원회는 이와 관련,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 확수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조작됐다"고 조작결과를 밝혔다. 우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제1차 인혁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직결성의 증거가 많다는 것과 조직결성이 인정되며 단 강제·강박·조직문서 등이 있어야 해서만 당시 고법회의 재판기록에서 학생·교수·민족당원·이와 관련된 물증이 없다고 의문사위원회는 밝혔다. 1974년 제1차 인혁당 사건 대상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이 북한 친민당의 지침을 받아 한·일회당 반대 대회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민족당원과 사건을 넘겨받은 서둘러서 10여 분 내에 검사 4명은 "고문에 고문에 수사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한 수 없다"며 기소장을 서명을 기록하고 이 중 3명이 사표를 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는 중앙정보부에서 총괄 수사한 후 군(軍) 감찰인 내선군(內線軍)의 검찰부로 넘겨졌다. 재판은 1·2심은 군사재판 3심은 대법원에서 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 6국의 지휘 아래 증정 수사관들과 경찰관들이 주로 수사를 맡았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구



◇ 울부짖는 가족들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이 있자 가족들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의문사위원회는 "중앙정보부 직원이 재판장에서 재판관들에게 수시로 죽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과 민형학련 사건 후 유신에 대한 최대 저항세력이었던 학생세력이 임을 알았고, 박정희 정부에 비판적 세력도 더 이상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의문사위원회는

당시 大法官 “외압 없었다”

진상규명 노력·과정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한 조작임이 밝혀지기까지는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등 민간단체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빨갱이 가족'으로 몰렸던 유가족들의 한맺힌 증언, 이들의 죽음을 지켜본 교도관들

증거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장씨의 죽음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뿐. 의문사위의 조사관 2명은 어렵게 입수한 400여명의 교도관 명단을 이용해 한 명씩 당시 교도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중 몇 명의 입에서 "온몸에 명이 들어 있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입을 다물던 당시 수사관들도

당시 교도관·수사관 '고백'이 큰 힘

과 수사관들의 '고백'도 진상 파악에 큰 힘이 됐다.

의문사위의 조사는 1975년 인혁당 사건과 관련, 구치소에 수감 중 뇌출혈로 사망한 장석구씨 사건에서 시작했다. 의문사위는 장씨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인혁당 사건의 실체와 성격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장씨와 함께 옥살이를 한 당사자들은 장씨가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문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했다. 당시 관련자들을 조사한 중앙정보부 조사관들도 "위(中正)에서는 작품을 만들는데 증거는 없고 고문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98년 대책위를 만들어 주모 사업과 함께 다큐멘터리 '4월 9일'과 책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을 펴냈고, 지난해 4월부터 민간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을 해왔다.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전기고문… 물고문… 몽둥이 짐질… 온몸에 피멍

고문 실상 증언들

인혁당사건 연루자들과 이들을 지켜본 교도관들이 전하는 고문의 실상은 말 그대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의문사위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과 파견 경찰관들에 의해 구타, 몽둥이 짐질,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등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1982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재권·이태환·정만진·유진곤·조만호씨 등 5명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80년대 중반에서 지난해까지 50대 중반~70세의 나이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모씨는 “하재완씨는 물고문으로 아랫배가 불룩하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으며, 우홍선씨와 함께 고문 후유증 때문에 조사받은 뒤 업혀서 구치소에 들어 왔다”고 증언했다. 파견 경찰 전모씨는 “피의자들을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양팔을 얹게 하고 군대 악전전화기 같은 것을 들렸는데, 그것이 전기고문 장치였다”며 “돌릴 때마다 피의자들이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물고문에 대해 경찰 이모씨는 “양손과 발을 묶은 뒤 거꾸로 매달고,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주전자로 물을 뿜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전기고문 흔적
사형 확정 판결 다음날인 1975년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수병씨 사체의 등과 발꿈치에는 전기고문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함세웅 신부 제공

제대로 서거나 앉지못해 “심장파열돼 죽을것같아” 술취한 수사관이 고문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펴낸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이라는 책에는 교도관 전모씨의 증언과 사형수들의 법정 증언 등이 담겨 있다. 전씨는 “하재완씨는 고문으로 참자가 빠지고 부서져 버리고 엉망진창 이었다”며 “이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물을 뿜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제대로 걸거나 바른 자세로 앉아 있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도예종씨는 상고 이유서에서 “고문으로 조사 때도 혐심증까지 생겨 여러 번 출도했다”고 했고, 우홍선씨는 법정 진술에서 “고문받을 때는 조사를 받던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으며, 전기고문을 두 번만 더 돌리면 심장이 파열돼 죽을 것 같았다. 고문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전창일씨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수사관 5~6명이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고 번갈아 조사하며 죽음 직전까지 물고 갔고, 검찰에 와서 “중앙정보부에서의 조사는 모두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가 중정 지하보일러실로 끌려가 다시 전기고문을 받았다.

교도관 전씨는 1989년에 이같은 내용을 증언하며 “그들을 내가 기억해 냈다고 해서 그 시대를 구차하게 살 아남은 우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씨의 ‘양심고백’ 13년 만에야 의문사위에 의해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진실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고문은 1차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파괴하지만 더욱 가혹한 것은 이들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죽는사실도 모른채 끌려오던 人革黨 사형수들 모습 선해”



“그 사람들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끌려나왔어. 백열등 아래에서 어리둥절해 두리번거리던 모습이 지금도 선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도예종·이수병씨 등 8명의 사형 집행을 지켜본 당시 군목(軍牧) 박정일(朴政一·62·경기도 부천·당시 육군 소령) 목사는 27년 전 상황을 떠올리면서 몸을 떨었다.

사형집행 지켜본 당시 군목 박정일목사

육군제일교도소 군종실장이었던 박씨는 1975년 4월 8일 오후 5시 퇴근길에 교도소장으로부터 ‘본부로 올라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그날 저녁 5시 뉴스에서는 ‘인혁당 재건위사건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교도소 본부로 올라온 박 목사에게 교도소장은 “내일 사형이 있으니 준비하라. 비밀 유지 때문에 육군제일교도소 인원이 차출됐다. 집에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 늦게 ‘서울서 왔다’는 차에 오른 박 목사는 “행선지가 서울구치소라는 말을 듣고 내일 죽는 사람들이 인혁당 재건위 사람들이라 란 것을 어렵잖이 눈치챘다”고 말했다.

사형이 집행된 4월 9일 새벽 4시, 박 목사는 육군교도소 교도관·육군본부 법무관 등과 함께 서울 구치소 내 교수대가 설치된 방으로 들어갔다. 수사관처럼 보이는

새벽 4시 잠 덜깬채 “여기가 어디냐” 물어 모두 罪 인정 않고 “언젠가 진실 밝혀질 것”

사람 7~8명이 사복 차림으로 먼저 와 있었다고 박 목사는 기억했다.

“4시30분에 잠이 떨 깨 얼굴의 첫 번째 사형수가 들어 왔어. 두리번두리번 하더니 ‘여기가 어디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했어. 법무관이 판결문을 읽고 유언을 물어보니 황당하다는 표정이야.

한 공포를 느낄 사이도 없이 형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아무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 ‘언젠가 이 더러운 정권은 망한다’고 했지. ‘한 번 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싶다’ 한 번도 있었어. 그 사람들 유언 중 받아들여진 것은 ‘담배 한 개비를 피고 싶다’는 것뿐이었어.”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박정일 목사가 17일 오후 경기 부천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의 사형 당시 상황에 대해 회고하고 있다.

/許永翰기자 younghan@chosun.com

사형 집행이 끝난 시간은 9일 오전 8시. 명한 채 밖으로 나온 박 목사는 구치소 정문 앞에서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발견했다. “연회를 하러 왔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지. 그걸 보고 구치소측이 특별 근무수당이라고 준 흰 봉투를 떨어버렸어. 아무리 험한 세상이었지만 그건 사람 할 짓이 아니었어.” 처연해 하던 그의 표정이 어느 새 딱딱하게 굳어 갔다.

人革黨재건위사건등 83건 조사 19건 의문사 규명

22개월 활동끝낸 의문사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지난 16일로 22개월간의 조사활동을 마쳤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 장준하 선생 사건 등 현대사에 굵직굵직한 흔적을 남긴 사건부터 노동·학생운동 과정이나 군 복무 도중에 일어난 의문사까지 83건이 유족들의 진정 또는 직권조사 등의 형태로 조사됐다.

의문사위는 이 중 19건을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의문사'로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들의 응어리진 한도 풀어냈다.

74년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도 "간첩 혐의 자백 후 투신자살했다"는 당국 발표와 달리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81년 삼청교육대에서 숨진 전정배(당시 29세)씨도 삼청교육대의 불법성에 저항하다 숨진 것으로 규

정됐다. 33건의 진정사건은 기각됐다. 대부분 단순사고사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죽음이었다고 의문사위측은 밝혔다. 87년 군부대부재자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저항하다 상관에 의해 타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정영관 사건은 선임병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92년 실종된 노동운동가 박태순씨도 경부선 철로를 걷다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사로 확인됐다. 84년 허원근 일병 사건은 "타살됐

다"는 증언자가 나왔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어 역시 기각됐다. 의문사

장준하선생 실족사
이철규씨 사건등 30건
진상규명 불능 판정

위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죽음의 과정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암살' 의혹으로 관심이 집중된 장준하 선생 실족사 사건, 6공 당시의 대표적 의문사 사건으로 꼽히는 89년의 이철규(당시 24세·조선대 교지편집장) 사건과 이내창(당시 27세·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사건 등 30건은 끝내 진상을 밝혀내지 못해 '진상 규명 불능' 판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1건은 유가족이 진정을 취하였다.

/廉康洙기자 ksyoum@chosun.com

박장수 사건 관련 보도

“한진중 전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타살 가능성”

일 법의학자 의문사위에 소견

지난 1991년 안기부에 의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탈퇴를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당시 31살)씨 의문사와 관련해, 박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시게타로 박사는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벽이나 바닥에 기댄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생기는 양면성 압박으로 인한 골절과 심폐 파열이 박씨의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미야마 박사는 또 “박씨의 양다리 골절도 추락이 아닌 구타에 따라 생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혜정 기자

“투신자살 박창수씨 타살 가능성”

법의학자, 의문사위에 감정서

1991년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朴昌洙·당시 31세)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박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법의학 감정이 나왔다.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滋太郎) 교수는 위원회에 보내온 감정서에서 “골절과 심폐 파열이 직접적인 사인(死因)인 것으로 보이며 주락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가미야마 교수가 보낸 감정서는 위해 여러 법의학자에게 요청한 감정서 중 하나”라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의학자가 보내는 감정서를 종합해 박씨의 사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의문사 박창수씨 타살 가능성”

日법의학자 감정결과 밝혀

의문사 총회 “국정원 방문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해온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오는 7일 실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정황상 국정원에 보관중인 것이 확실한 장준하 사망사건 등의 존안자료 요청에 대해 국정원측이 내용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보내주거나 폐기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국정원을 방문해 자료가 존

재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한편 1991년 안기부에 의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탈퇴를 종용받던 과정에서 의문사한 것으로 알려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당시 31세)씨에 대한 법의학 감정결과 구타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종길 교수와 김준배씨 의문사에 대한 법의학 감정에 참여했던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 滋太郎) 교수는 지난주 위원회에 보내온 감정결과서를 통해 “박씨의 대퇴골과 골반 등에서 추락에 의한 손상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다리의 골절도 구타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세영기자 sylee@kddaily.com

6共시절 의문死한 전노협 박창수씨

“투신자살 아닌 타살 가능성”

日법의학자 감정서 제출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당시 31세)씨가 구타 등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 감정서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시게타로 교수가 우편으로 보낸 감정서에서 “벽이나 바닥에 기댄 상태로 한쪽에서 가격했을 경우 생기는 양면성 압박으로 인한 골절과 심폐파열이 박씨의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며 “추락사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최종길 교수와 김준배씨 의문사에 대한 법의학 감정에도 참여했던 가미야마 교수는 이 감정서에서 “박씨가 언뜻 다리가 먼저 떨어지는 족위(足位) 상태로 추락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퇴골, 골반 등에서 족위 추락에 의해 나타나는 손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양다리의 골절도

구타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1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장을 맡아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를 이끌다 구속됐으며, 그해 5월 구치소에서 이마를 다쳐 안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의문사했다.

● 이범준기자 weiv@sgt.co.kr

의문사 총회 “국정원 방문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피진정기관의 관련자료 비협조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진정 기관들이 위원회의 한시성을 악용,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다”며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상임위원 등 위원회 관계자 10명이 오는 7일 국가정보원 자료보존실을 방문, 제출을 요구한 관련자료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범준기자

전노협 활동중 1991년 숨진 박창수씨

“투신자살 아닌 타살 정황”

日법의학자 감정서 제출

의문사제 “국정원 방문조사”

1991년 노태우(盧泰愚)정권 시절 안전기획부에 의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탈퇴를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朴昌洙·당시 31세)씨 의문사와 관련, 박씨가 구타 등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법의학 감정이 나왔다.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 滋太郎) 교수는 1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벽이나 바닥에 기댄 상태에서 한쪽에서 가격했을 경우 생기는 양면성 압박으로 인한 골절과 심폐

피열이 박씨의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며 “주락사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아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가미야마 교수는 의문사위 요청에 따라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교수와 한총련 간부였던 광주대생 김준배(金準培)씨 의문사 사건 감정에 참여했었다.

가미야마 교수는 감정서에서 “박 창수씨가 언뜻 다리가 먼저 떨어지는 족위(足位) 상태로 주락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퇴골, 골반 등에서 족위 주락에 의해 나타나는 손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양다리의 골절도 구타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1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

장을 맡아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를 이끌다 구속됐으며, 그 해 5월 구치소에서 이마를 다쳐 안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던 중 의문사 했다.

한편 가미야마 교수는 89년 거문도에서 실족, 의사한 것으로 발표됐던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정(李來昌·당시 27세)씨의 사인에 대해 안면공격을 받아 뇌진탕을 일으킨 후 다른 사람에 의해 물속에 던져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서를 보내왔다.

의문사위는 이에 따라 박창수, 이내정 사건과 장준하(張俊河) 선생 사건 등 총 12건의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7일 국정원 실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유족 유품은”

“화재로 을상한”

日법의학자 “박창수씨 타살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91년 당시 안기부에 의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탈퇴를 종용받던 과정에서 의문사한 것으로 알려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당시 31세)씨에 대한 법의학 감정결과, 구타 등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 滋太郎) 교수는 지난주 위원회에 보내온 감정결과서를 통해 “벽이나 바닥에 기댄 상태에서 한쪽에서 가격했을 경우 생기는 ‘양면성 압박’으로 인한 골절과 심폐 파열이 박씨의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길 교수와 김준배씨 의문사에 대한 법의학 감정에도 참여했던 가미야마 교수는 “박씨의 대퇴골과 골반 등에서 주락에 의한 손상을 찾아볼 수 없다”며 “다리의 골절도 구타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1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을 맡아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를 이끌다 구속됐으며, 그 해 5월 구치소에서 이마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던 중 의문사했으며 수사당국은 당시 박씨가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병원 6층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했었다.

south@yna.co.kr

(끝)

전경식 사건 관련 보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오늘 조사활동 종료

박창수 의문사 '규명 불능' 처리

국정원 비협조가 한 몫…법개정 소극적인 정치권에 비난여론

박창수(당시 31세·한진중공업 위원장)씨 의문사가 결국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진상규명위 조사관한 강화 등 의문사 특별법 개정에 대한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박씨 사건은 타살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는 등 진상규명을 눈앞에 뒀으나 조사활동 종료와 관계기관 비협조 등으로 벽에 막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박씨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지만 이를 확정 지을 정도는 아니어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비협조가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박씨 사건에 당시 안기부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박씨가 타살당했다는 명백한 증거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규명위는 16일로 조사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박씨

사건은 사실상 역사에 물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박씨 사건은 지난 8월 일본 법의 학자인 가미야마 박사가 박씨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박씨 죽음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할 국정원이 수사협조를 거부,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는 의문사규명위의 수사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인 체벌규정이 없고 조사기한도 제한된데다 관계 기관들이 '보안',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을 물론 조사관한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문사규명위 조사활동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조사관한 강화는커녕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법개정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하, 이철규 사건 등 대표적 의문사는 조사도 제대로 못한 채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우려를 낳고 있다.

박씨의 아버지 황자익(66)씨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준 채 조사가 끝나게 됐다"며 "3살 때부터 걸리온 창수 생각에 지금도 잠 못 이루지만 억울한 죽음을 물어주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v.com